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 제32조)

III. 검토의견

-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난 2000년 1월 2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주체가 종전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000. 7. 22 설립)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 규정 중 해당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별도 의견 없습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6200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首都圈埋立地管理公社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首都圈埋立地를 효율적으로 管理하도록 함으로써 首都圈地域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의 적정한 처리와 資源化를 촉진하고, 周邊地域住民의 쾌적한 生活環境의 조성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附則 <제6200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3條 (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 施行당시 地方自治法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립된 首都圈埋立地運營 管理組合과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하여 設립된 環境管理公團에 속하는 首都圈埋立地の 設置·운영에 관한 權利·義務는 公社가 이를 包括承繼한다.

第5條 (首都圈埋立地運營管理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地方自治法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립된 首都圈埋立地運營管理組合은 이 法 施行日에 同法 第154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된 것으로 본다.